

업 무 협 조

믿을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CLFA 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 13층(남대문로5가, 단암빌딩)/ TEL 02)3487-5800/ FAX 02)6670-9650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업무-42

발신일자 : 2016. 7. 6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시도지사 요청 금융감독원 검사 현황 조사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개정 대부업법 상 **보호감시인 자격요건**과 관련하여 **대부회사 근무 경력 인정**에 대한 **금융당국의 해석이 최근 변경**되었습니다.(붙임1 협회 공문)

※ 기존: 시도 요청검사 대상 대부회사 근무 경력 인정(2002.10월 시행)

→ 변경: 직권검사대상 대부회사 근무 경력만 인정(2008.3월 시행)

3. 이에 대응하기 위해 **2008.3월 직권검사제도 도입 이전 금융감독원의 대부회사 검사 현황을 파악**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시어 오는 **7월 8일(금) 오후 2시까지 협회로 회신(FAX 02-6670-9650)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협회 공문 1부.

2. 조사서식 1부.

문의: 기획조사부 한성택 과장(내선 115). 끝.

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



수신처 : 골든캐피탈대부, 굿타이밍대부, 기협기술금융대부,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, 넥스젠파이낸스대부, 대산대부, 동그라미대부, 디케이대부, 리드코프, 머니라이프대부, 미래크레디트대부, 미즈사랑대부, 밀리언캐쉬대부, 바로크레디트대부, 발란스대부, 비컴콜렉션대부, 산와대부, 스타크레디트대부, 씨엔에이대부, 아프로파이낸셜대부, 안전대부, 애니원캐피탈대부, 액트캐쉬대부, 앤알캐피탈대부, 어드벤처대부, 에이원대부캐피탈,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, 엔씨캐피탈대부, 엘하비스트대부,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, 엠케이금융대부, 에스캐피탈대부, 엘로우캐피탈대부, 오케이파이낸셜대부, 원캐싱대부, 웰릭스캐피탈대부, 웰컴크레디라인대부, 위드캐피탈대부,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, 유미캐피탈대부, 유아이크레디트대부, 유원캐피탈대부, 인터머니대부,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,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, 캐시앤캐시대부,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, 콜렉트대부, 태강대부, 태산대부,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, 티에이자산관리대부, 티포스코페레이션대부, 하트캐싱대부, 한빛자산관리대부, 헬로우캐피탈대부 대표이사

업 무 협 조

믿음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CLFA 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13층(남대문로5가,단암빌딩)/ TEL 02)3487-5800/ FAX 02)6670-9650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업무-40

발신일자 : 2016. 7. 1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(긴급)대부업이용자 보호감시인 자격 요건 관련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7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오늘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관련 항목	변경 해석	종전 해석
「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범위(개정 법률 제9조의7제4항제1호가목 관련)	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등만 포함(현행 대부업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의2)	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등(현행 대부업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의2) 및 금융감독원 검사 요청대상 대부업자등 포함(현행 대부업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)



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

수신처 : 가교에이엠씨대부 등 391개 전회원사 대표이사

시·도지사 요청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현황 조사

□ 조사 목적

- 대부업법 상 직권검사제도 도입 이전 금융감독원을 통한 대부회사 검사[※]
(관리·감독) 현황을 파악,

보호감시인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직권검사대상 대부회사만을 금융감독원
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대응하고자 함.

※ 대부업법 §12③ 및 시행령 §7에 따라 시도지사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
금융감독원에 대부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(2002.10월부터 시행됨).

- － 검사사유 : ▶ 2이상의 시도에 등록 ▶ 월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 초과
▶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타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등

□ 조사 항목

회 사 명			
작성자	(성명/직위)	(연락처)	
회사 설립일		대부업 등록일	

구분	검사일	검사사유	검사관
2002년			
2003년			
2004년			
2005년			
2006년			
2007년			
2008년			

※ 7월 8일(금) 오전 4시까지 회신 요청 드립니다(FAX 02-6670-9650).

※ 문의 : 기획조사부 한성택 과장(02-3487-5800 내선 115)